# 국가해사감독국

◎ 소개

국가해사감독국은 1947 년에 창립되였다. 국가해사감독국은 국가의 해사정책과 법규에 따라 나라의 해사감독사업을 책임진 정부기관이다. 국가해사감독국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해상 안전 및 안보를 보장하고 해상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, 인적 및 물질기술적토대를 구축하였다. 또한 국제해사기구의 정성원국으로서 국제법적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. 국가해사감독국에는 기구체계도에서 보여주는것처럼 3 개의 보장부서 (기구체계도 웃부분)들과 11 개의 현행부서들이 있다. 국가해사감독국은 해외에 4 개의 대표부들을 두고 국내에 12 개의 도(시)해사감독처들과 그 아래 시, 군(지구) 주재 해사감독소들을 두어  해사감독사업보장을 위한 정연한 행정기구체계를 수립하였다.

◎ 기구체계도 및 직능

△ 부서별 직능

**① 종합처**

첫째: 국가해사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총화대책한다.

둘째: 국의 직능, 지방해사감독기관의 임무를 수정보충하며 그 집행정형을 총화대책한다.

셋째: 국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받고 기록 및 총화대책하며 현행업무와 관련한 모든 문건들을 심의한다.

넷째: 국의 질관리체계계수립을 책임지며 매해 내부심사를 진행하고 해당한 개선대책을 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. 이 사업과 관련하여 조선해사인증쎈터와 련계를 가진다.

다섯째: 조선선급협회의 사업을 지도한다.

**② 해사법규조사처**

첫째: 국가의 해사관련 법규들의 초안 작성 및 수정보충하는 사업을 진행한다.

둘째: 해사관련법규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법규수정과 관련한 문제들을 료해대책한다.

**③ 해상안전처**

첫째: 배 및 배운영기관들의 안전관리체계와 배 및 항시설안전보장체계가 국가의 법규에 따라 수립되도록 하는 사업을 책임진다.

둘째: 국제항해배들에 대한 출항전검열을 책임진다.

셋째: 우리나라항구에 입항하는 외국배들에 대한 기항국검열을 책임진다.

넷째: 해상안전과 관련한 대외적인 교류와 협조사업을 진행한다.

다섯째: 안전관리, 안전보장, 출항전검열, 기항국통제검열과 관련한 국가의 법규작성사업에 참가하고 지원한다.

④ **해상환경보호처**

첫째: 바다와 강, 호수에서 배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법규정과 그 수정문초안작성사업에 참가하며 채택발효된 해당 법규정의 준수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조직진행한다.

둘째: 국가적인 배기름오염비상대응체계를 세우고 배기름오염시 그 제거를 위한 사업을 조직 및 조정한다.

⑤ **해난사고조사심의처**

첫째: 해난사고조사와 관련한 법규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장악하여 국에 법규수정안을 제출한다.

둘째: 해난사고통보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정상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.

셋째: 관할지역 도해사감독처들의 해난사고조사 및 심의처리사업을 장악지도한다.

넷째: 해난사고조사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주기적으로 조직진행하며 사고조사를 과학화,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.

다섯째: 정기적으로 해난사고의 통계 및 원인분석사업을 진행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국적인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련관기관들에 사고통보하는 사업을 진행한다.

여섯째: 해난사고조사에서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를 진행한다.

⑥ **배, 선원등록처**

첫째: 배 및 선원 등록과 삭제, 배의 최소안전정원수제정과 관련된 국가의 법, 규정작성사업에 참가하여 지원하며 그와 관련한 감독통제를 진행한다.

둘째:국제항해하는 우리국적배들에 국제해사기구번호와 배소유기관식별번호, 안전관리회사식별번호를 할당해주는 사업을 진행한다.

⑦ **선원훈련양성처**

첫째: 선원훈련양성과 관련된 국가의 법, 규정작성사업에 참가하여 지원하며 그와 관련한 감독통제를 진행한다.
둘째: 선원훈련평가를 진행한다.

**⑧ 선원기술자격심사처**

첫째: 선원기술자격심사와 관련된 국가의 법, 규정작성사업에 참가하여 지원하며 그와 관련한 감독통제를 진행한다.
둘째: 선원들에 대한 기술자격심사를 진행한다.

**⑨ 해상통신구조조정처**

첫째: 해상통신 및 해상탐색구조와 관련된 국가의 법, 규정작성사업에 참가하여 지원하며 그와 관련한 감독통제를 진행한다.
둘째: 국가적인 해상통신구조사업을 조정한다.

**⑩ 국제기구사업처**

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 해사기관들과의 대외사업을 진행한다.

**⑪ 과학기술처**

첫째: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집행을 위한 행정조직사업을 진행한다.
둘째: 해사감독일군들의 양성 및 자격급수사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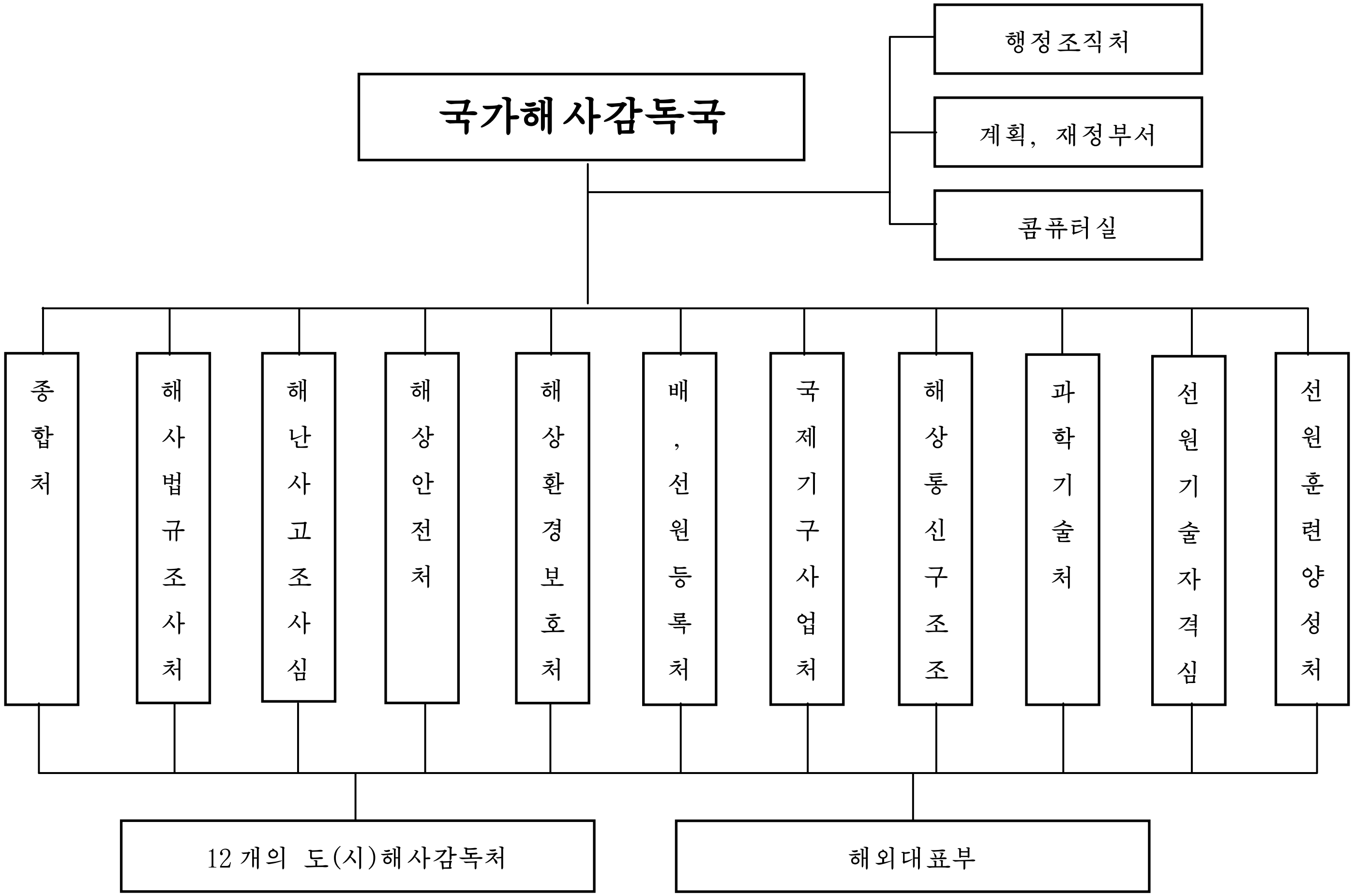
△ 국가해사감독국 기구체계도